

대구지방법원 2020. 5. 7 선고 2015가단5009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변론 종결 2020. 4. 21

판결 선고 2020. 5. 7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들은,원고의 J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2카단42890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2002. 10. 31. 한 가압류결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,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기재 판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,482,731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

J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02카단42890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이 2002. 10. 31. 청구금액 4,000만 원으로 하여 포항시 북구 K 대 122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원고 소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결정(이하 '이 사건 가압류결정'이라 한다)을 하였고, 그 가압류결정이 2002. 11. 1. 집행된 사실, 원고는 2015. 6. 18.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L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사건(이하 '이 사건 경매사건'이라 한다)의 배당기일에서 13,344,586원을 배당받았으나,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, 한편 J는 2006. 7. 9. 사망하였고, 피고들이 J의 최종 상속인들인 사실, 원고의 J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채무가 소멸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, 피고 I 사이에는 갑 제1~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, 반증이 없으며,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다툼이 없으므로, 원고의 J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,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.

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2. 배당금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

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그를 가압류권자로 하여 배당된 13,344,586원 중 상속지분에 따라 각 1,482,73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한다.

살피건대 J나 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J를 가압류권자로 하여 배당된 13,344,586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.

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

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경대